

90 6 15

기안용지

(전화: 773-3674)

분류기호 문서번호	문재35300-215	시행상 특별취급	15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사행일자	'90.6.		
보조기관	문화관광부장관 전립	협조기관 법무담당관 행정국장	문시통제
	문화재국장 김경		
	문화재계장		발송인
기안책임자	연익훈 (장택인)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발신 명의	시 장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고시		
(제 1 안)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동 건			
1. 시장방침 1396호('90. 6. 4)와 관련 '90. 5. 18 개최한 서울			
특별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별첨 고시(안)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			
시 유형문화재및 기념물등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목록 : 별 첨 나. 근거 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55조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			
호조예 제7조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정하고 동조예 1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함.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첨 부 : 고시(안) 1부. 끝.

(제 2 안)

수 신 : 문화재관리국장

참 조 : 문화재1과장

제 목 : 서울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90. 5. 18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칭 부여내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를 지정하였기 통보합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1부. 끝.

(제 3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문화재보존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통보

1. 문화재 보호법 제55조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보존 제7조 규정의
이거 명칭 부여내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를 지정하였기 통보한다,

2. 삼천동유적(사민동사산, 석무1과, 모서정비과, 견후과, 조과과,
포서정비과, 영암동지정영)의 문화재 지정통보에 관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통보

1. 필참 고시원 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하였기 재산소유자 및

리자에게 통지하고자 시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2부. 끝.

(제 6 안) 2차

수 신 : 영보관

발 신 : 문화재과장

제 목 : 시보게재 의뢰

1. 필참 고시원 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하였기 재산소유자 및

리자에게 통지하고자 시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2부. 끝.

(제 7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통지

1. 귀중단 및 책단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문

화재로 지정되어 동조례 10조에 의거 통지하오니,

3264

2. 문화재 보존관리 관계 법규를 준수하시어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후

손에게 길이 남겨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직장서 1부. 끝.

수신처 : 관악구 봉천11동 1656-22 손흥안씨 양도공짜 총회

강서구 가양동 23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3265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5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 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0. 6. 18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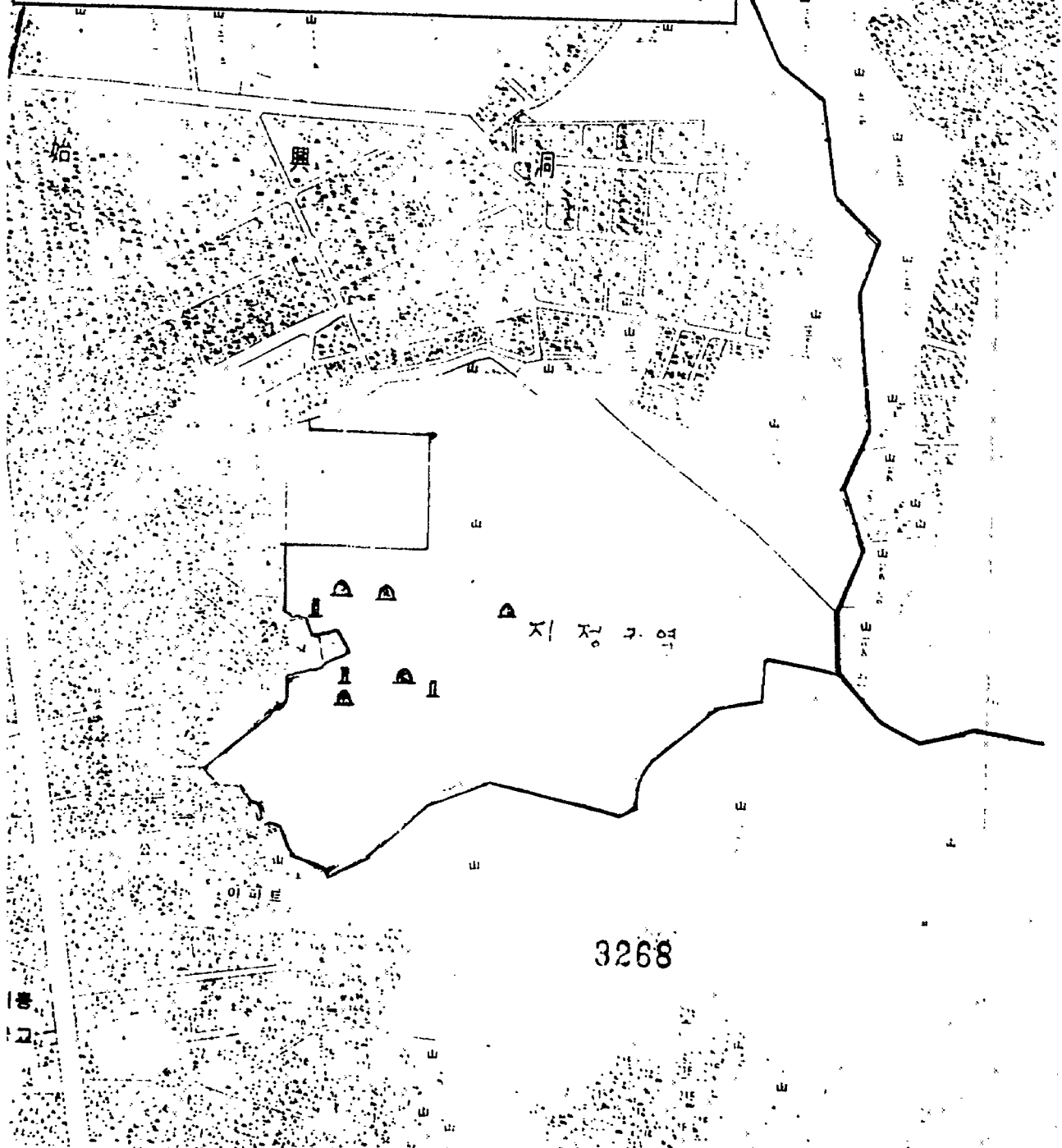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 정 물 건	소 계 지	구 조 및 규 모	관 리 단 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74 호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묘 역) 151,758㎡ (묘역내) 묘 5기 신도비 3개 문무관석 12개 장명동 5개 묘전비 6개 석 상 5개 사 당 1동	구로구 시흥동 산 126-1	(묘 역) 지번 : 구로구 시흥동 산 126-1 지목 : 임야 지적 : 151,758㎡ (묘역내) 지정물건 현황동일	순흥안씨 양도공파 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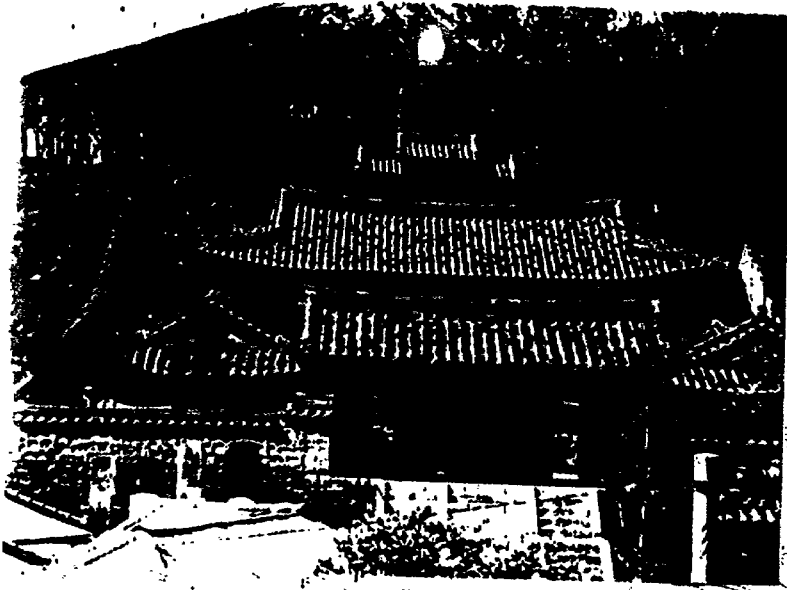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정물건	지 정 보 지				관리단체
				지 번	지 적	지 목	소유자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 8 호	양천향교 지	(토지) 1필지 1,782㎡ (건물) 8동 71평	강서구 가양동 234	1,782㎡	사 적 지	국유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교재단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 9 호	망원정지	(토지) 1필지 1,127㎡ (건물) 1동 40평	마포구 합정동 457-1	1,127㎡	임 야	시유지	마포구청장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 10 호	보신각지	(토지) 12필지 2,906.8㎡ (건물) 1동 144평	종로구 관철동 102 - 9 102 - 7 102 - 6 102 - 6 45 - 10 45 - 5 45 - 6 45 - 9 45 - 7 45 - 3 45 - 4 13 - 21	34㎡ 44.3㎡ 34.2㎡ 66.1㎡ 13.6㎡ 475㎡ 996㎡ 62.5㎡ 340.8㎡ 191.7㎡ 240㎡ 101.8㎡	과 도 과 과 과 과 과 도 과 과 도 과	서울시 " " " " 국유지 " 서울시 " " " " "	종로구청장

주요특징

- 묘와 신도비, 묘갈동이 조선조 초기 인물역사, 조각사, 모형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
- 신도비
 - 양도봉(안경봉) : 조선조 개국공신, 한성부판윤 - 1435년 제작
 - 정수봉(안순) : 세종조, 공조, 호조판서 - 1442년 제작
 - 문수봉(안승선) : 세종조, 대사헌, 병조판서 - 1454년 제작



3268



漢

江

洞

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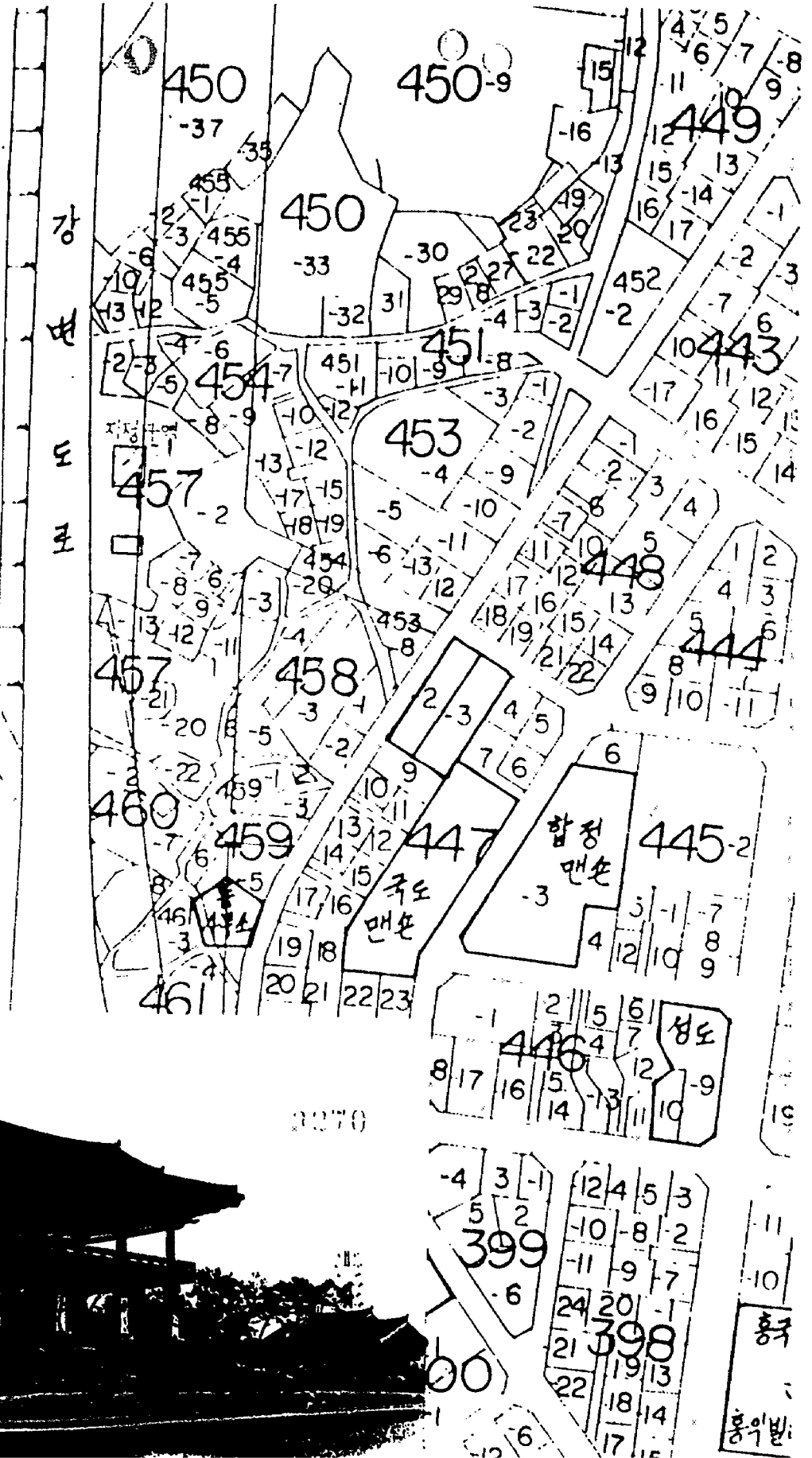
加

陽

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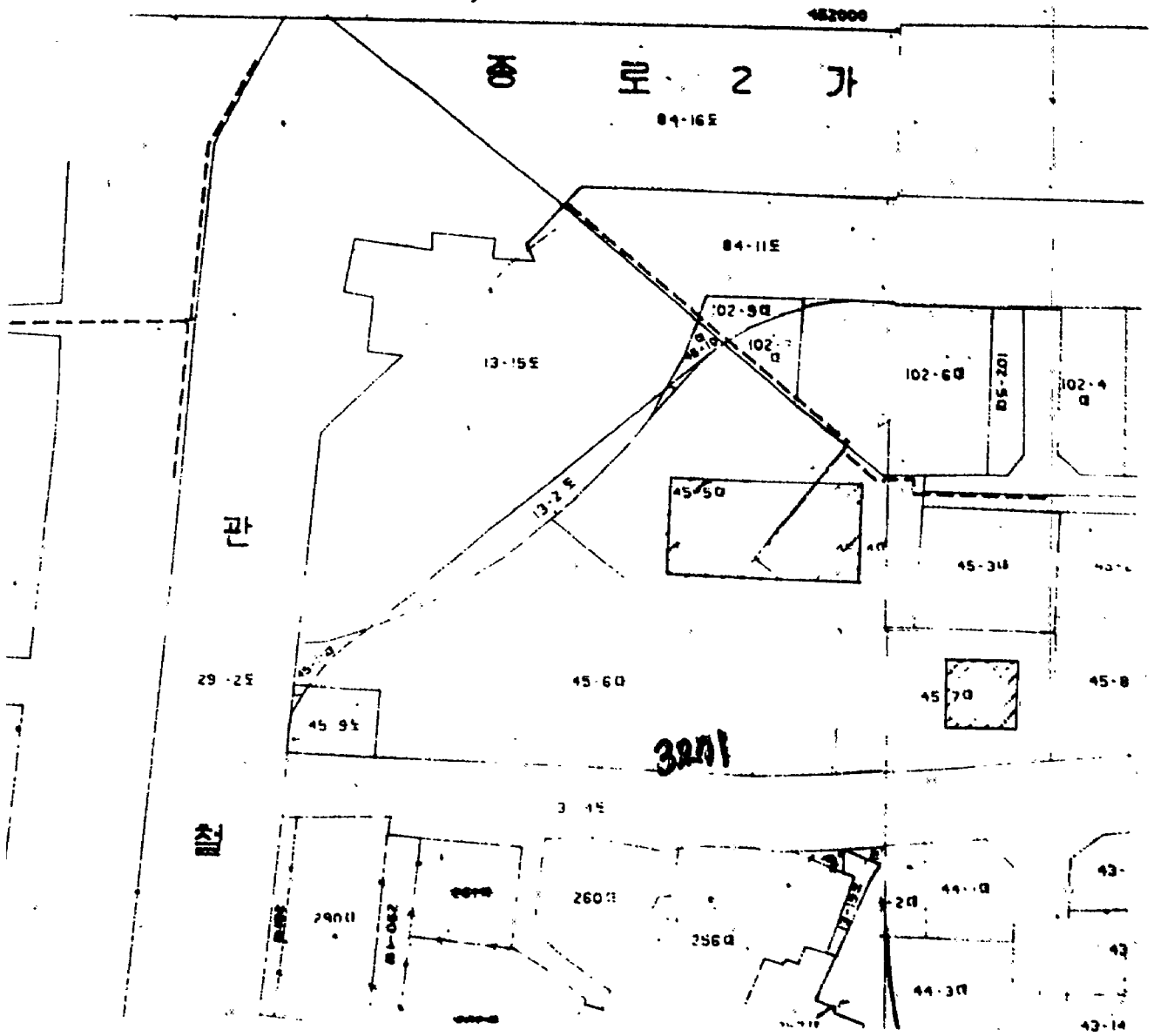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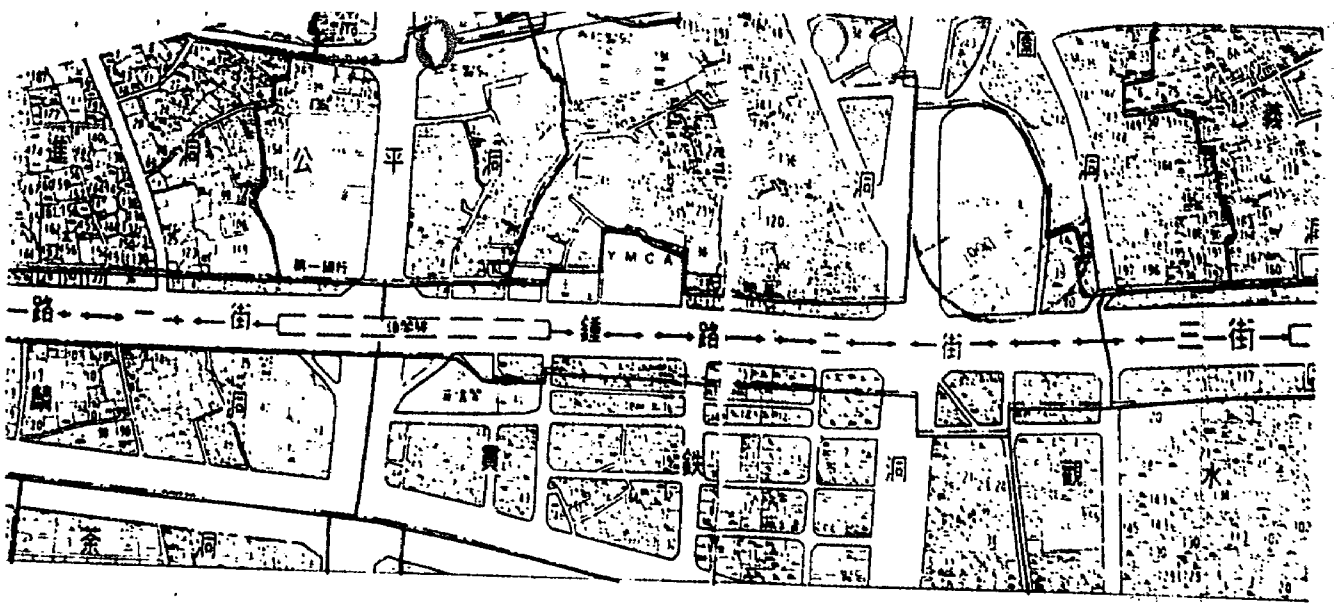
陽川書院

3269



0270

홍익
 홍익빌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안)

명 칭 : 순응안씨 양도공파 묘역

수 량 : 묘역 : 151,758 m²
묘역내 : 묘 5개, 신도비 3개, 문무관석 12개,
장명등 5개, 묘전비 6개, 석상 5개,
석당 1동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1990 년 6 월 21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안)

명 칭 : 양천양교지

수 량 : 토지 1,782 m^2
(건물 8동)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1990 년 6 월 18 일

서울특별시장

가 남 물

제 9 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안)

명 칭 : 당 원 정 저

수 량 : 토지 1,127 m²
(건물 1동)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1990 년 6 월 19 일

서울특별시장

기 남 물
제 10 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서 (안)

명 칭 : 보신각저

수 량 : 토지 2,906.8 m^2
(건물 1동)

위를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1990 년 6 월 18 일

서울특별시장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요약

(회의개최 상황)

○ 일 시 : '90. 5. 18 (금) 16:00-18:00

○ 장 소 : 별관 2층 회의실

○ 참석인사 : 2분과 위원 6명

문명대, 임효재, 이현희, 심우준, 이성무, 허영환

(심의결과 요약)

안 건	결 과 요 약
1. 한우물 복원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복원 방법은 제2안(통일 신라 축조 구조와 조선축조 구조 일부 복원) 으로 추진 한다. (조선조 유구 유실 우려) · 명칭, 보호구역 확대는 사적지로 지정하도록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한다. · 사적지 지정과는 별도로 석구상(해태상)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함을 검토한다. · 안내판 설치시는 소위원회 구성하여 시대 구분등 정밀조사하여 문안 작성한다. · 진입로는 관변과 와 협의추진한다

안 건	결 과 요 약
<p>2.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문화재 지정</p>	<p>·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p> <p>· 단, 최근 설치한 석물들은 제거함을 조건으로 한다.</p>
<p>3. 문화재 지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천 향교 · 망원정 · 보신각 	<p>· 양천향교등 3건은 건물의 축조 연대나 양식등 보다는 역사성에 의한 사적 가치로서 보존가치가 크기 때문에 양천향교는 "양천향교지"로 망원정은 "망원정^정"로 보신각은 "보신각지"로 각각 지정하여 보존관리한다.</p> <p>· 다만 지정구분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적지에 준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망원정지의 경우 원래의 위치를 재조사하여 넓게 지정토록 한다.</p>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안 건	결 과 요 약
1. 한옥보존지구 추진 경위 보고 및 현지 답사 등 자문 요구	.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위원들이 현지 답사키로 결의 *. 최종결정전에 선진국등의 전통건축물 보존실태등을 문화재 위원대표(3명정도) 가 현지 출장 견학후 반영할것을 건의
2.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 기준검토	. 회의자료에 의거 검토후 차후 합동회의시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기타 사항	. 강동구 암사동 소재 "바위절터"에 대한 재 정밀 답사및 문화재 지정이 필요함.

1. 한우물 복원정비 (복원방법, 보호구역확대, 명칭변경등)

(심 의 개 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0호 한우물 정비공사중 유구 발굴로, 한우물 구조파악후 복원방법을 결정키로한바, 1차 발굴시 시대가 다른 우물지가 발견되어 결정하고자 하며, 산성의 운곽이 밝혀지는대로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문화재 명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

○. 복원방법 안(한우물)

- 제 1 안 : 신라축조 구조와 조선축조 구조 동시 복원
- 제 2 안 : " " " " 일부 복원
- 제 3 안 : 신라축조 구조부만 복원

○. 보호구역 확대 지정

- 발굴조사 결과 산성운곽이 밝혀지면 산성일대를 확대지정 관리

○. 명칭 변경

- 한우물 주변에 산성과 해태상등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호칭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3278

○. 진입로 확보

- 현재 진행중인 신림 ~ 시흥간 도로개설과 관련 진입로 확보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 공사복원 방법은 제 2안(신라축조 구조와 조선축조 구조 일부복원)으로 추진한다. — 조선조 유구 일부가 유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강토처리
- . 명칭, 보호구역 확대는 사적지로 지정하도록 문화재관리국에 상정한다.
- . 사적지 지정과는 별도로 석구상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함을 검토한다.
- . 안내판 설치시는 소위원회 구성하여 시대구분등 정밀조사하여 문안작성한다.
- . 진입로 부분은 관건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문화재 지정

(심 의 개 요)

구로구 시흥동 산 126-1에 소재한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일원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

○. 문화재 지정 신청내용

- 소재지 : 구로구 시흥동 산 126-1번지
- 면적 : 151,758 m²(소유주 : 순흥안씨 양도공파 종회)
- 묘역현황
 - 묘 5기 (양도공 등 3대)
 - 신도비 : 3개 (양도공, 정숙공, 문숙공)
 - 문무관석 12개, 장명등 5개, 묘전비 6개, 석상 5개
 - * 제작년대 : 1400년대 (조선조 초기)
- 특 징 : 조선조 초기 분묘제도, 신도비, 묘갈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심 의 결 과 및 조 치 계 획)

- .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
 - . 단, 최근 설치한 석물들은 제거함을 조건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형
문화재 제 74호로 지정 조치
- (지정 조건인 석물 철거 완료시 지정서 교부)

3. 문화재 지정 검토

(심의 개요)

강서구 가양동 소재 양천향교,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정, 종로구 관철동 소재 보신각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요청한 사항임.

○. 지정 대상 개요

(양천 향교)

- 소재지 : 강서구 가양동 234
- 향교 현황
 - 건물 : 8동 71평
 - 대지 : 11필지 539평(국유지)
 - 운영현황
 - 5성 송조 4현에 대한 년 2회 추모제 실시
 - 학생과 시민대상으로 한문, 서예학원 운영
- 향교 연혁
 - 1411년경 창건
 - 1969년 재단법인 양천향교 허가
 - 1981년 건물 8동 신축및 보수

3282

(망 원 정)

- 소재지 : 마포구 망원동 137, 207-1 번지
- 유 래
 - . 태종의 둘째아들 효령대군의 정자
 - . 1925년 을축년 홍수시 유실
 - . '89. 10 한강변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으로 복원
- 복원 규모, 형태
 - . 대지 350평, 연건평 40평 (2층 누각형태)
 - . 정면 4간, 측면 2간의 익공식 건물

(보 신 각)

- 소재지 : 종로구 관철동 102
- 건립 현황
 - . 규 모 : 대지 851평, 건 물 : 144평 (2층 누각)
 - . 건립년도 : 1979년
- 유 래
 - . 보신각은 태조 7년(1390) 한양에서 처음 종을 달았던 종각
 - . 광해군 11년(1619) 현 보신각으로 종루 이전
 - . 고종 32년(1895) 고종이 보신각이라 명명
 - . 6.25 동란으로 종각이 완전 파손
 - . 1979년 세종시대의 규모를 본따 정면 5간, 측면 4간의 중층 누각으로 재건함.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 양천향교는 "양천향교址"로 문화재 지정한다.

○. 망원정도 "망원정址"로 정하여 지정한다.

보호구역은 재조사후 넓게 지정토록 한다.

○. 보신각도 "보신각址"로 문화재 지정한다.

- 상기 지정에 대한 지정구분은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 조치

회 의 록 (요약)

- 문화재 과장 : 개최 인사
- 문화관광국장 : 인사 말씀
- 문화재 과장 : 2분과 위원장 손보기위원 불참에 따라 심우준 위원을
금일 회의 위원장으로 추천.
- 심우준 위원 : 위원들께 인사 및 양해 구함
- 문화재 과장 : 첫번째 안건인 한우물 복원정비 추진관련 심의개요설명
- 임효재 위원 : 한우물 복원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비디오 및 차트로 설명
- 문화재 과장 :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시급히 재개하여야 하는바,
금일 복원방법을 결정해 주기 바람.
- 문명대 위원 : 복원방안은 발굴팀의 의견대로 하도록 하자.
- 이성무 위원 : 사업개요 다시한번 설명해 줄것을 요망
- 임효재 위원 : 주요 골자를 다시 설명
- 문명대 위원 : 복원 방법 3개안중 제 2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허영환 위원 : 역시 제 2안이 가장 좋다고 본다.
- 위 원 들 : "제 2 안"으로 결정하자.
- 문화재 과장 : 오늘의 심의개요중 문화재 명칭 변경건및 보호구역 확대지정 건은 문화재 관리국에 상정해 보는것이 어떨지요?
- 분명대 위원 :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적지로 지정하면 좋들듯 하다.
그럴경우 석구상은 별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토록하자.
- 문화재 과장 : 사적지로 지정하드라도 석구상은 별도 지정 검토하겠음.
- 이성무 위원 : 정비방안중 산책로, 휴식공간 확보도 좋지만, 산성으로써 의 주된성격(군사적 의미부각)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문화관광국장 : 사업 완료후 안내판 설치시 산성의 주된 성격등을 충분히 넣도록 하겠다.
- 분명대 위원 :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시대파악등 정밀 조사하도록 하자
- 심우준 위원 : 그럼 본건을 정리하자며,
공사방법은 제 2안으로 하고 명칭, 보호구역 확대건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적지 지정토록 상정하고, 석구상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시 정밀조사하여 충분한 내용을 넣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위 원 들 : 그렇게 결정하는것으로 하자.

- 문화재 과장 : 두번째 안건인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의 문화재 지정전에 대한 심의개요 설명
- 문명대 위원 : 1차 현장 조사결과에 대하여 슬라이드로 설명하고, 검토자 의견으로써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허영환 위원 : 1차 조사시 함께 하였으며, 역시 지정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이성무 위원 : 신도비 비문은 금석문 대판에 게재 되었나?
- 문화재 과장 : 금년 발간하게 되는 금석문 대판에 게재할 계획이다.
- 심우준 위원 : 위원들이 문화재로 지정하는것을 찬성하는것 같은데 이의가 있는가?
- 위 원 들 : 이의가 있을수 없다. 지정하자.
- 이성무 위원 : 본건은 미술사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사(正史)쪽으로도 지정 가치가 있다.
- 문화재 과장 : 세번째 안건인 양천향교, 망원정, 보신각 건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의개요및 제안사유를 슬라이드 병행 설명
- 문명대 위원 : 건물 자체는 지정이 힘들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하여 관리함이 좋은데 지방 문화재에는 "사적지" 지정이 없다.
- 이성무 위원 : 그동안 유형만 중요시 한 감이 있다.
"양천향교址"라고 지정하여 보존함이 좋겠다.

- 위 원 들 :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 문화재 과장 : 그러면 "향천향교지"로 지정하는것으로 하되, 문화재 지정 구분은 검토후 결정하는것이 좋겠다.
- 위 원 들 : 찬성이다.
- 문화재 과장 : 다음은 망원정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람.
- 분명대 위원 : 망원정 역시 "망원정址"로 하는것이 좋겠고, 암사동에 있는 바위절터도 지정 가치있는 것으로 차후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다시한번 정확히 재 조사하였으면 좋겠다.
- 허영한 위원 : 일중선생이 그린 열수팔경도(평풍)의 망원정, 바위절터등을 활용하면 좋을듯 하다.
- 이현희 위원 : 차후 재발굴조사등을 고려 보호구역은 넓게 잡는것이 좋겠다.
- 이성무 위원 : 정확히 조사하여 안내문안 작성 하자.
- 문화재 과장 : 그럼 "망원정지"로 지정하되 보호구역은 넓게 지정토록 검토하고, 지정구분 역시 검토후 결정하는것으로 하겠다.
- 위 원 들 : 그렇게 하자.
- 문화재 과장 : 다음 보신각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분명대 위원 : 역시 "보신각址"라고 지정하자.
- 이현희 위원 : 찬성이다.

- 허영환 위원 : 지정함이 타당하다.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려 한다.
- 문화관광국장 : " —— 址"로 지정하여도 건축물 신축시 양각적용 받는가?
- 문명대 위원 : 적용 받는다.
- 심우준 위원 : 그럼 3건 모두 " —— 址"로 할것을 의결하고 차후 문안등은 자문받아 작성하고, 지정구분은 검토후 결정하는것으로 한다.
- 문명대 위원 : 지정범위(보호구역)는 소위원회 구성 별도 자문받도록 하자.
- 문화재 과장 : 이상으로 심의안건을 마치고 문화재 주변 건축물 사전승인 기준안에 대하여 설명.
위원들 검토후 다음번 합동회의시 협의결정 해줄것을 바람.
- 위 원 들 : 그렇게 하겠다.
- 문화재 과장 : 끝으로 한옥보존지구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위원들의 협조 요망.
- 문화관광국장 : 한옥보존지구내 주민들의 동향을 설명하고, 보다 정확한 대안 수립을 위하여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위원들이 현지 답사 해줄것을 요청함.
- 위 원 들 : 일정이 정해지면 현지 답사토록 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정전에 인원구성하여 선진국의 보존실태등을 현지 조사 연구하여 반영함이 좋겠다.
- 문화재 과장 : 앞으로 검토 연구하겠다.
- 폐회 인사.

서울特別市文化財委員會(第2分科)會議資料

○日時：'90. 5. 18(金) 16:00

서울特別市

3490

審 議 事 項

1. 한우물 復元方法 및 保護區域과 名稱變更	3
2. 順興安氏 良度公派 墓域 文化財 指定	5
3. 文化財 指定 檢討	9
○ 陽川 鄉校	
○ 望 遠 亭	
○ 普 信 閣	

報 告 事 項

1. 韓屋保存地區 整備計劃 推進經緯	
※ 文化財 周邊 建築物 事前承認 基準 檢討	

3291

審議事項

1. 한우물 復元整備 (復元方法, 保護區域擴大, 名稱變更等)

가. 提案 事項

서울市 有形 第10號 한우물 整備工事中 遺構發掘로 한우물 構造 把握後 復元方法을 決定키로한 바, 1次 發掘에 依하여 時代를 달리하는 우물址가 發見되어 決定하고자 하며,山城의 輪廓이 밝혀지는 대로 保護區域의 擴大指定과 文化財 名稱을 變更 決定코자 하는 事項임.

나. 提案 事由

- 1次 發掘結果 朝鮮時代 石築構造와 統一新羅時代 石築構造가 겹쳐진 狀態로 發見됨에 따라 이에따른 復元方法을 決定하여 工事を 早速히 再開코자 하며, '89年 審議時 檢討 키로 한 "한우물"의 名稱 變更과 保護區域 擴大指定 事項을 審議 決定코자 함.

다. 主要 骨子

○ 事業推進 經緯

- '88.12 한우물 整備復元 設計 完了
- '89. 3-6 한우물 設計檢討 및 發注, 着工
- '89. 8 한우물 流水量 調査, 한우물 歷史的 性格把握 必要 (委員會議時 決定)

- '89.10-11 學術調查實施(新羅築造우물構造, 遺物等 發見)
- '89.12 復元工事 中止, 復元 方法은 發掘 調査後 決定키로 함.
- '90. 1- 6 發掘調査 實施(한우물 二重構造, 第2우물址, 建物址, 山城址 調査發見)

○ 復元 方法案(한우물)

- 第1案 : 新羅築造 構造와 朝鮮築造 構造 同時 復元
- 第2案 : 新羅築造 構造와 朝鮮築造 構造 一部 復元
- 第3案 : 新羅築造 構造部만 復元

○ 保護區域 擴大 指定

- 發掘調査 結果 山城輪廓이 밝혀지면 山城一帶를 保護區域으로 擴大指定 管理코자 함.
(遺構保護 必要 및 此後 精密調査에 對備키 위함)

○ 名稱 變更

- 우물周邊에 山城과 해태상(一名:石狗)等이 있으므로 이를 總括的으로 呼稱할 수 있는 名稱 또는 文獻上에 의한 名稱 “호암山城”(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變更

○ 進入路 確保

- 現在 推進中인 新林~始興間 道路開設과 關聯 新設道路에서 進入할 수 있는 駐車廣場 空間과 進入路를 確保하여 보다 많은 市民이 文化財를 볼 수 있도록 하고 利用 市民의 便宜 提供

2. 順興安氏 良度公派 墓域 文化財 指定

가. 提案 事項

九老區 始興洞 山 126-1 에 所在한 順興安氏 良度公
派 墓域一圓을 서울시 文化財로 指定하고자 申請한
事項임

나. 提案 事由

- 朝鮮朝 初期 墓域의 原形保存으로 史的 研究資料로 活
用하고, 周邊 都市化로 인한 墓域浸蝕과 遺蹟 景觀 毀
損을 防止하기 위하여 文化財 指定코자 하는 것임

다. 主要 骨子

- 所在 地 : 九老區 始興洞 山 126-1

面 積 : 151,758 m^2

所有 主 : 順興安氏 良度公派 宗會

- 墓域 現況

- 墓 : 5 基

- 良度公, 孀肅公, 文肅公, 少尹公, 監司公

- 神道碑 : 3 個

- 良度公 神道碑, 孀肅公 神道碑, 文肅公 神道碑

- 文武官石：12個
- 長明燈：5個
- 墓前碑：6個
- 床石：5個
- 祠堂：1個所

○ 神道碑 內譯

- 規格 및 形態

名 稱	總 高	身 高	身 幅	身 厚	材 料
良度公神道碑	225 cm	118 cm	56 cm	18 cm	화 강 석
靖肅公神道碑	266 cm	181 cm	95.6 cm	34 cm	"
文肅公神道碑	244 cm	138 cm	88 cm	18 cm	"

- 製作年代：1,400年代(世祖朝)

(良度公 1435年, 靖肅公 1442年, 文肅公 1454年)

- 글 쓴 이

良度公 神道碑：尹 准 (世宗朝)

靖肅公 神道碑：卞 季 良 (世宗朝)

文肅公 神道碑：成 三 問 (世宗朝)

• 墓 對象者 主要略歷

— 良度公(安景恭) : 1347年(충목왕 3) ~ 1421年(世宗 3)

* 1392年(太祖 1) 開國公臣 3等

* 大司憲, 都評議司使, 漢城府 判尹(10代) 歷任

* 太宗朝에 興寧府院君에 任용됨

— 靖肅公(安純) : 1371年(공민왕 20) ~ 1440年(世宗 22)

* 良度公 안경 공의 아들로써,

* 世宗朝 工曹, 戶曹判書, 判中樞院事를 歷任하고, 崇政大夫에 오름

— 文肅公(安崇善) : 1392年(太祖 1) ~ 1452年(文宗 2)

* 靖肅公 안순의 아들로써,

* 世宗朝에 大司憲, 兵曹判書, 集賢殿 大提學等을 거쳐 知春秋館事에 오름

— 少尹公(安崇信) : 1395年(太祖 4) ~ 1441年(世宗 23)

* 良度公 안경 공의 孫子이며 文肅公의 동생

* 世宗朝에 朝散大夫로 中樞院經歷 仁壽府少尹을 歷任

- 監司公 (安崇孝) : ~ 1460 年 (世祖 6)
- * 良度公 安景恭의 孫子이며, 少尹公의 동생
- * 世宗朝 京畿道 觀察使, 大司憲 歷任
- * 世祖朝에 中樞院副使, 工曹, 戶曹參判等 歷任

라, 檢討 意見 (文明大, 許英桓 委員)

- 申請地域의 墓들은 朝鮮初期 墳墓制度 研究에 貴重한 資料로써 높이 評價됨
- 墓域의 神道碑와 墓碣들은 朝鮮朝 建國에 이바지한 人物의 行跡과 朝鮮朝 歷史 研究에 크게 寄與한 資料이며, 墓形式과 樣式 研究에 貴重한 資料임
- 文武官石은 朝鮮朝 初期 彫刻史 研究 및 인물상 樣式 變遷 研究 資料로 크게 注目됨
- 以上の 重要性으로 보아 서울市 文化財로 指定함이 妥當함
- 但, 最近 分墓改築時 設置한 봉분 받침석과 其他 新設 石造物을 除去하는 條件으로 指定하여야 함 (撤去後 指定書 交付)

3. 文化財 指定 檢討

가. 提案事項

江西區 加陽洞 所在 陽川鄉校, 麻浦區 望遠洞 所在 望遠亭, 鍾路區 貫鐵洞 所在 普信閣 建物を 文化財로 指定 保存할 價値가 있는지 與否를 檢討 要請하는 事項임.

나. 提案事由

- 上記 建物들은 近代에 建立되어 建物으로써의 史的 價値는 輕微하나 그 由來나 歷史的 意義로 볼때 서울市 文化財(紀念物, 文化財 資料等)로 指定하여 保存코자 함.

다. 指定對象 概要

〈陽川 鄉校〉

- 名 稱 :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鄉校財團

- 所 在 地 : 江西區 加陽洞 234

- 鄉校現況

- 建 物 : 8棟 71坪

- 地 址 : 11筆地 539坪(國有地)

- 活用現況

- 5聖 宋朝 4賢 東國 18賢에 대한 追慕祭를 年 2回 올리 고 있음.

- 平日에는 學生과 一般市民을 對象으로 年中 漢文과 書藝를 가르치는등 傳統 鄉校의 맥을 잇고 있음.

○ 鄉校沿革

- 1411 (太宗祖)년경 創建
- 1910年 韓日合邦으로 廢止
- 1945年 解放과 同時 復活
- 1965年 陽川鄉校 財團法人 設立
- 1969年 財團法人 陽川鄉校 文公部 許可
- 1981年 建物 8棟 新築 및 補修
(대성전, 외삼문, 명륜당, 동제, 서제, 전사청, 내삼문, 화장실)

○ 參考事項

- 陽川鄉校는 서울市內 唯一한 鄉校임.
- '82.11.3 서울市 文化財 委員會議에서 1次 檢討된바 있으나 '81年 新築된 建物이라 하여 否決된바 있음.

<望遠亭>

○ 所在地：麻浦區 望遠洞 137,207-1番地

○ 由來

- 太宗의 第2子 孝寧大君의 亭子로써
- 世宗7年(1425年)農事形便을 살피고 이곳에 들었을때 解渴의 단비가 내려 喜雨亭이라 했음.
- 成宗이 그의 兄 月山大君에게 이 亭子를 下賜하며 望遠亭이라 하였음.
- 1925年 乙丑年 大 洪水時 流失되어 주춧돌만 남게됨.
- '89.10. 漢江邊 文化遺蹟址 復元事業의 一環으로 復元

○ 復元 事業 推進

(推進 經緯)

- '86. 2 漢江邊 文化遺蹟 發掘調查 基本計劃 樹立
- '87. 7 發掘調查 實施 (東國大 發掘調查團)
- '88. 6 復元 工事 着工
- '89. 10 竣 工

(復元 規模, 形態)

- 埜地 350 坪 延建坪 40 坪 (2 層 樓閣 形態)
- 正面 4 間, 側面 2 間의 익공식 建物

○ 參考事項 : 喜雨亭記를 토대로 復元함

< 普 信 閣 >

○ 所 在 地 : 鍾路區 貫鐵洞 102

○ 建立現況

- 規 模 : 埜地 - 851 坪, 建物 - 144 坪 (2 層 樓閣)
- 建立年度 : 1979 年

○ 由 來

- 普信閣은 太祖 7 年 (1398) 漢陽에서는 처음으로, 廣州에서 鑄造한 鐘을 달았던 鐘閣으로서 임진왜란때 鐘과 함께 消失

- 現在の 寶物2號인 普信閣鐘은 世祖 14年(1468年) 鑄造하여 圓覺寺에 設置하였던 鐘을 圓覺寺 弊寺로 南大門內, 明禮洞峴等에 移轉하였다가 光海君 11年(1619年) 鍾路區 鍾路2街 102番地 現 位置의 普信閣으로 移轉(普信閣 名稱은 1895年(高宗 32年) 高宗이 命名)
- 그후 鐘閣은 朝鮮朝 末까지 4차례의 火災가 있었으며, 6.25 動亂으로 鐘閣이 完全 破損
- 1953年 元來의 位置에서 다소 뒤로물려 重建
- 1979年 世宗時代 規模를 본따 正面5間, 側面4間의 重層 鐘閣으로 再建하고 上層에 鐘을 걸음
- 1985年 寶物2號인 普信閣鐘은 國立 中央博物館 뒷뜰로 옮겨 保管
- 現在の 普信閣에는 市民의 誠金으로 1985年 새로만들어 달았으며 3.1절, 光復節, 除夜等에 打鐘

○ 參考事項

- 寶物2號로 指定된 普信閣鐘이 國立中央博物館으로 移轉됨에 따라 '89년에는 保護區域도 해제되어 무려 518年の 年輪을 가진 普信閣이 文化財 保護法等에 의하여 保存管理가 어렵게 되어있는 寶情임.

文化財·周邊 建築物 事前承認 基準 檢討

〈 現行基準 및 運營經緯 〉

- 建築法 施行令 第7條 第3項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 周邊 建築物 新·改築 許可時 事前承認

(서울市 文化財委員會에서 事案別 審議)

- '81.8.28 複合民願의 迅速 處理를 위하여 事前承認 基準 마련
(市 文化財委員會에서 決定)

- 4大門內 : 3段階로 區分

1. 保護區域 및 指定區域 境界上으로부터 앙각 27°線 以內
2. 保護區域 및 指定區域 境界에서 文化財높이를 基準하여 앙각 27°線 以內

- 파고다公園, 聖公會聖堂, 社稷公園, 韓屋保全地區, 景福宮, 昌德宮, 祕苑, 昌慶宮, 德壽宮, 宗廟

* 雲峴宮, 慶熙宮 등 未 包含

3. 建物높이 2倍 地點에서 文化財 높이를 基準하여 앙각 27°線 以內

- 南大門, 東大門, 普信閣, 獨立門, 郵政總局, 貞洞教會

- 4大門밖 : 保護區域 및 指定區域 境界上으로부터 앙각 25°線 以內

○ '82.11.3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審議對象 補完

- 高度基準에 抵觸되지 않더라도 審議對象
 - 5層以上の 聯立住宅이나 아파트 新築
 - 注油所, 廢車場, 變電所等 特別히 景觀沮害 建築物
- 高度基準에 抵觸이 되더라도 審議對象
 - 教育機關, 公共業務 施設等

< 問 題 點 >

- 4大門안의 文化財 周邊에 對한 양각適用基準이 3段階로 分類되어 있으나 分類基準이 明確치 않고 隣接地域과 같은 性格의 文化財中에서도 適用基準이 달라 民怨 惹起
- 4大門안과 外廓의 양각적용도 外廓地域의 規制가 強化되어 있어 衡平에 어긋난다는 民怨이 있음
- 國家指定文化財 保護區域內 建築物은 文化財管理局 現象變更許可만으로 新·改築이 可能하고 地方文化財는 個別審議를 하는 등 全般的으로 一貫性이 없음
- 都市開發과 宅地不足等으로 高層化 趨勢에 따라 民怨增大 豫想